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54
----------	-------

발의연월일 : 2026. 2. 27.

발 의 자 : 송옥주·윤준병·임미애  
전종덕·김동아·이원택  
김현정·임호선·황명선  
문대림·서삼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병이 발생한 산지에 활엽수림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이 경제성 면에서 유리한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림을 선호하고 있어 병충해 방지를 위한 대체수종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대신해 활엽수림을 조성하고자 하지만 활엽수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함.

또한 양봉농가들은 양질의 꿀 생산을 지속하기 위해 밀원수림 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전체 산림의 65%가 넘는 사유림을 경영하는 산주들은 밀원수림 조성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및 병충해를 방지하거나 농림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권유하는 수종을 심은 임업인들에게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에 병충해 예방,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육림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기준에 재해·병충해 방지 및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수종의 식재량을 추가함(안 제14조제2항).

법률 제 호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탄소흡수 등을”을 “탄소흡수, 병충해 예방,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 등을”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판매금액 등을”을 “판매금액, 재해·병충해 방지 및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수종의 식재량 등을”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4.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이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u>탄소흡수 등을</u> 말한다.</p> <p>5. ~ 9. (생 략)</p> <p>제14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한정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영하는 산지의 면적, 연간 임산물 <u>판매금액 등을</u>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 -----<u>탄소흡수, 병충해 예방,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 등을</u>-----.</p> <p>5. ~ 9. (현행과 같음)</p> <p>제14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 -----<u>판매금액, 재해·병충해 방지 및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u>을</p>

<p>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p> <p>③ (생략)</p>	<p><u>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수종의 식재량 등을-----</u> -----.</p> <p>③ (현행과 같음)</p>
--	--